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51685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9년 12월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3234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2020. 5. 26.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E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나3090)에서 2020. 12. 22.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E는 화성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한식집을 운영하였다.

다. 주식회사 E는 2019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 주소지에서 상호 변경 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종전 소송 계속 중 체결된 점, 2019년 12월 기준

주식회사 E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자신의 가수금채권 89,300,000원으로 영업장 인수 금액과 상계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주식회사 E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영업양도는 주식회사 E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영업양수 경위 및 시기, 당시 주식회사 E의 재산상태, 피고의 지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기록상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연 5%의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별지)

1. 점포 주소지 : 화성시 F

2. 상호 : G

끝,

